

# 2018 대구 시니어산업 박람회

2018. 10. 19<sup>금</sup> - 21<sup>일</sup> EXCO

## ■ 참가신청서

회 사 명		대표자명	
주 소		전 화	
팩 스		홈페이지	
담 당 자		직 위	
휴대전화		E-mail	
주요전시상품			

## ■ 전시부스 및 부대시설 신청내역

구 분		신청내역	단 가		신청금액
조기신청 1차 6. 29 까지 2차 8. 10 까지	독립(3mX3m)	부스	1차	₩ 1,050,000/부스	원
			2차	₩ 1,200,000/부스	
	조립(3mX3m)	부스	1차	₩ 1,260,000/부스	원
			2차	₩ 1,440,000/부스	
일반신청 (8. 11 이후)	독립(3mX3m)	부스	₩ 1,500,000/부스		원
	조립(3mX3m)	부스	₩ 1,800,000/부스		원
전기	단상 220V	KW <input type="checkbox"/>	₩ 60,000/KW		원
	삼상 220V	KW <input type="checkbox"/>			원
	삼상 380V	KW <input type="checkbox"/>			원
	24시간(필요시 체크)	KW <input type="checkbox"/>	₩ 80,000/KW		원
전화	시내/시외겸용	대	₩ 80,000/대		원
급배수		대	₩ 200,000/대		원
인터넷		PORT	₩ 120,000/PORT		원
바 코드 시스템		대	₩ 150,000/대		원
소 계					원
부가가치세					원
합 계					원
입금계좌		대구은행 504-10—247270-6		예금주	(주) 마이스산업연구원

## ■ 신청방법

전시부스비 및 부대시설비를 지정 계좌로 송금 후 ①참가신청서, ②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사무국으로 등기우편, FAX 또는 E-mail로 제출하시면 됩니다.

2018년            월            일

회사명:

대표자 :

(인)

2018 대구 국제 시니어산업 박람회 사무국 귀중

TEL 053-943-1400 FAX 053-943-1401 E-MAIL mice5979@naver.com

## [전시회 참가규정]

### 제1조 용어의 정의

1. '전시회'라 함은 '2018 대구 시니어산업 박람회'를 말한다.
2. '전시자'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회사, 조합,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.
3. '주최자'라 함은 '2018 대구 시니어산업 박람회' 조직위원회를 말한다.

### 제2조 참가신청

1. 전시자는 참가 신청서를 '2018 대구 시니어산업 박람회' 조직위원회 사무국에 정해진 일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2. 전시자는 참가신청과 동시에 계약금 50%를 납입하여야 하며, 잔금은 정해진 일자까지 전액 납입하여야 한다.
3. 전시자가 계약금이나 잔금을 지정된 기한 내 납입하지 않은 경우, 주최자는 참가약정을 해지 및 전시참가를 임의 배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기 납입한 참가비 및 부대비용은 일절 반환되지 않는다.

### 제3조 부스위치 배정

1. 주최자는 부스 참가규모, 참가실적, 신청순위, 전시품을 기준으로 부스 배정 및 위치를 선정할 권한을 갖는다.
2. 주최자는 전시회 준비기간 이전이면 전시자 에게 할당된 부스를 변경할 수 있으며, 전시자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.

### 제4조 설치 및 철거

1. 설치 및 철거는 주최자가 규정한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, 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에 대한 손상 발생시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.
2. 전시자는 전시품 및 전시장치물 시공에 관한 자료와 전시회 홍보에 필요한 정보를 주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### 제5조 보험, 보안, 및 안전

1. 주최자는 전시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를 취해야 한다.
2. 전시자는 전시기간은 물론 설치 및 철거기간동안 배당된 면적 내에 발생하는 전시품 및 장치물에 대한 훼손이나 도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
3. 전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화재, 도난, 파손, 안전사고, 기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배상 등 일체의 책임소재는 전시자에게 전적으로 귀속되며, 주최자는 이를 책임지지 않는다.
4. 전시회와 관련하여 전시자가 방문객 등 제3자와 민·형사상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배상 등 일체의 책임소재는 전시자에게 전적으로 귀속되며, 주최자는 이를 책임지지 않는다.

### 제6조 전시장 관리

1. 전시자는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전시부스에 배치하여야 한다.
2.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공간을 벗어날 수 없으며, 주최자는 전시회의 성격과 부합되지 않는 전시품에 대하여 전시를 제한할 수 있다.

### 제7조 전시회 취소 또는 변경

1. 주최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
2. 단, 불가항력 등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 개최일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으며, 이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.

### 제8조 양도 및 전대

전시자는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조직위원회의 승인 없이 신청부스를 타 업체에 양도 혹은 전대할 수 없다.

### 제9조 계약 취소 및 철회

1. 전시자가 배정된 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거절하거나 지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, 주최자는 즉시 계약을 종결할 권리가 있으며, 계약 종결시 납입한 부스비 및 부대시설비는 반환되지 않는다.
2. 전시자가 참가신청서를 제출 후, 참가 취소할 경우 전시자는 주관자에게 서면으로 취소 통보를 해야하며,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참가취소 후 15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지불해야 한다.
  - 행사 시작일로부터 100일 이전 참가취소 : 총 참가비의 50%를 위약금으로 납부
  - 행사 시작일로부터 50일 이전 참가취소 : 총 참가비의 80%를 위약금으로 납부
  - 행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전 참가취소 : 총 참가비의 100%를 위약금으로 납부
  - 위약금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,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.
3. 전시자가 주최자의 승인 없이 참가를 취소하는 경우, 전시자가 이미 납부한 금액은 반환되지 않는다.

### 제10조 보충규정

1.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,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
2. 전시자는 해당 전시장 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.

### 제11조 분쟁해결

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주최자와 전시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간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을 따른다.